

12.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20년 10월 26일
- 제출자 : 대구광역시장
- 회부일자 : 2020년 10월 28일
- 상정일자 : 제279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

제2차 문화복지위원회(2020년 11월 24일) 원안 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)

□ 제안이유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성별영향평가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변경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.

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김창업)

□ 주요 검토사항

- 제명은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에서 「성별영향평가법」으로 개정하고, **안제1조부터 안 제16조**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‘성별영향분석평가’ 용어를 ‘성별영향평가’로 일괄 변경하였음.

<제명 및 용어 변경사항>

- *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→ 「**대구광역시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**」
- * 성별영향분석평가법 → 「**성별영향평가법**」
- * 성별영향분석평가 → **성별영향평가**

□ 검토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이 「성별영향평가법」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, 인용 법령, 관련 용어가 일괄 정비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,
-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과 해당 조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및 사업 계획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,
-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환경영향평가, 부패영향평가, 고용영향평가 등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, 명칭의 형식이 달라 그 개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성별영향평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.
- 성별영향평가가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하고 양성평등 관점에서 여성 및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인 만큼,

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 평가대상 정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으며, 성별영향평가의 내실화를 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답 변
대구시 추진사업 중 성차별적인 지표가 많은지 궁금하며,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차별 없는 정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.	일자리사업 관련 일부 지표들이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, 성별 차별없는 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.

5. 토론요지

- 없음.

6. 수정안 요지

- 없음.

7. 심사결과

-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.